

직제규정

제정 2011. 10. 20. 규정 제 2호

개정 2013. 1. 7. 규정 제12호

개정 2014. 3. 13. 규정 제17호

개정 2014. 12. 24. 규정 제27호

개정 2015. 11. 4. 규정 제33호

개정 2015. 12. 21. 규정 제37호

개정 2016. 6. 17. 규정 제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잡월드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3조(구성원) ① 잡월드의 구성원은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②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직원의 직렬은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직급은 1급 내지 5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조직) ① 잡월드에 경영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운영본부를 둔다.

- ② 경영관리본부에 경영기획팀, 운영지원팀, 시설안전팀을 둔다.
- ③ 대외협력본부에 사업관리팀, 고객홍보팀을 둔다.
- ④ 운영본부에 직업진로연구개발팀, 전시체험운영팀을 둔다.

제5조(한시조직) 이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한시조직을 구성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구 및 정원) ① 잡월드의 기구 및 조직단위 내의 직렬·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각 부서별 인원 배분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제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2급과 3급, 일반직 4급과 5급 직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조직별 업무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월드를 대표한다.

제8조(본부장) ① 본부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별표 1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팀장) ① 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팀장은 이사장과 본부장을 보좌하며, 이사장과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팀을 총괄한다.

③ 팀장의 기본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방침 입안
2. 팀의 업무계획 작성 및 이사장·본부장의 결정사항 보좌
3. 소관 팀의 예산 신청·관리 및 집행
4. 팀내 업무분장 및 정원 관리
5. 팀내 소속원의 출장 허가 등 복무관리
6. 팀내 소속원의 근무평정

제10조(팀 소속원) 팀 소속원은 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1조(업무분장) 각 본부 및 팀의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2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3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부장, 팀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겸직)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1명의 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다른 본부장 또는 팀장을 동시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잡월드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4.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4.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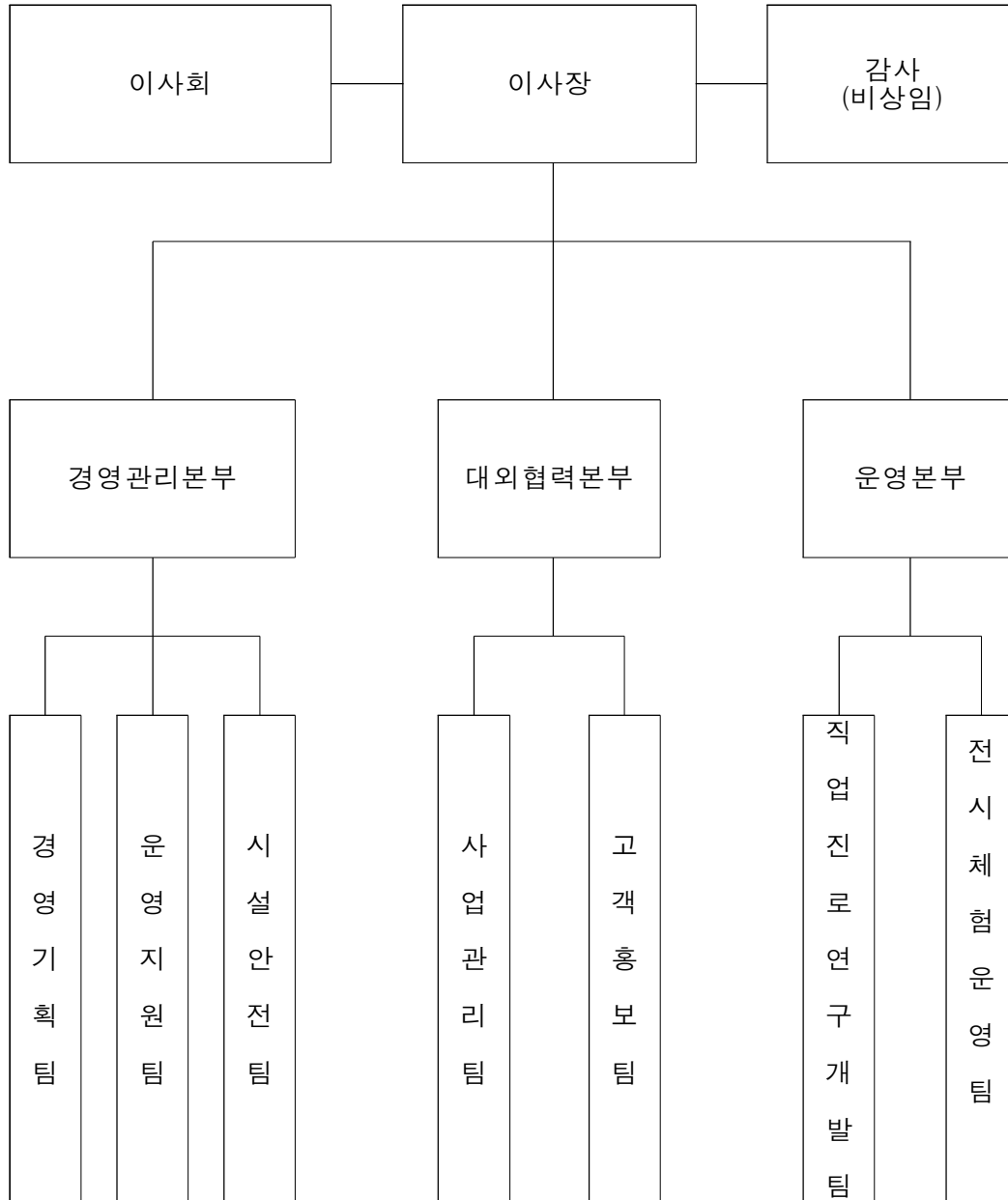
부 칙<신설 2016.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6. 6. 17.>

□ 기구표

- 이사장, 3본부, 7팀으로 구성



□ 정원표

(단위:명)

구 분	직 급	정 원
합 계		53
임원	이사장	1
	이사	
	감사	
일반직, 기술직	계	52
	1급	3
	2급	7
	3급	8
	4급	16
	5급	18